

2026년도 부산광역시 「공유기업·단체 지정/재지정 및 신규지정 사업비 지원」 모집 공고

지역 공유경제 산업 역량강화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부산광역시 공유기업·단체 지정/재지정’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단체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부산경제진흥원장

1. 모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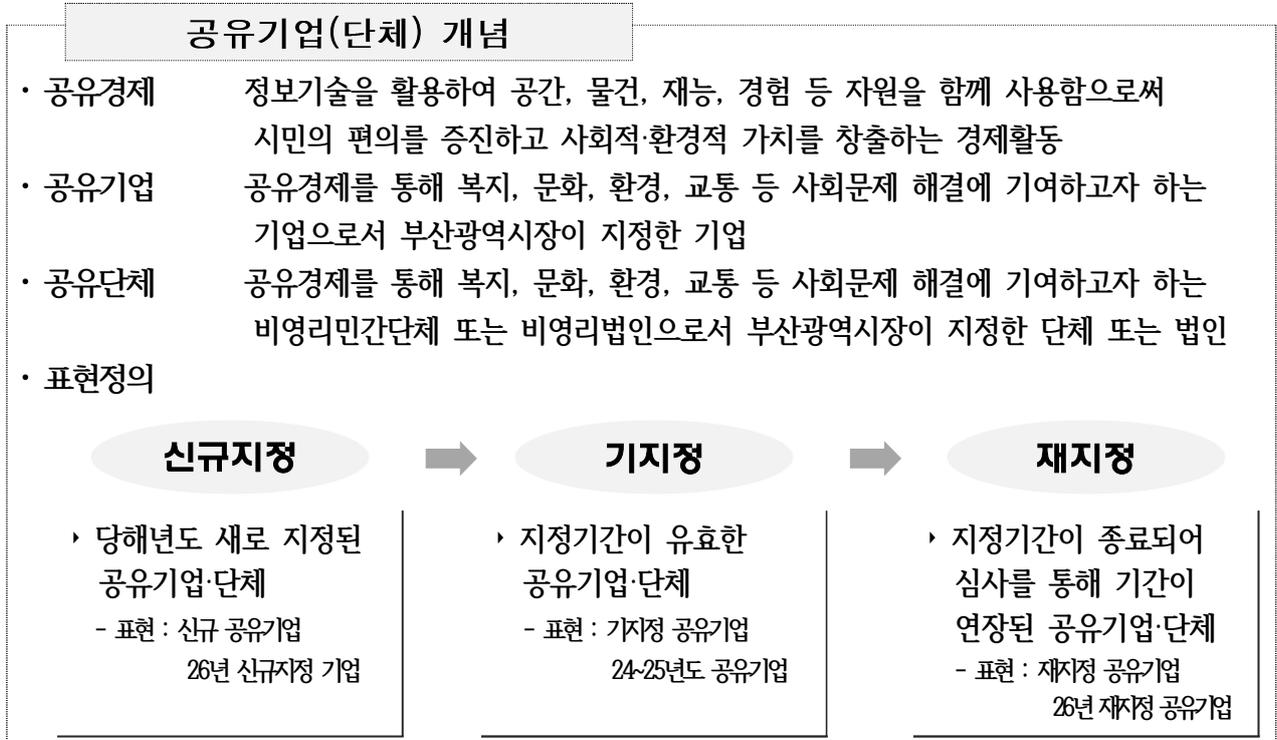
- 공 고 명 : 2026년 공유기업·단체 신규지정/재지정 공모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4. 3.(금)까지
- 신청대상 :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사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산 지역 내 기업·단체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① 공유기업·단체 신규지정	· (신 규) 2026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②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재지정) 2026년도 5월까지 지정 만료(예정)된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 2023년도 지정기업 및 2023년도 이전 지정기업 대상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j121@bepa.kr)
 - **체크리스트, 신청서식(날인 확인), 증빙자료 등 1개의 PDF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파일 양식과 함께** 메일 제목을 ‘2026년 공유기업·단체 지정(기업명)’으로 제출
- 결과통보 : 4월 중(예정), 개별통보

2. 모집 요건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지정]



- 지정대상 :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경제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지정규모 : 13개사 내외(재지정 포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정혜택
 - 부산시장 명의 공유기업 지정서 및 인증 현판 제작 수여
 - ‘공유경제 부산’ BI 사용권 부여
 - 26년도 신규지정 공유기업은 3백만원 이내 지원
 - 촉진사업비(최대 1천만원) 신청자격 부여
 - 1:1 BM 진단 컨설팅 등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네트워킹 등 지원

[공유기업·단체 신청요건]

- ① (필수)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유기업·단체 지정 대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② (필수)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하거나,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 창출(준비)하는 기업·단체

③ (필수) 공고일 기준, **본점이 부산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을 부산에서 하는 기업·단체

④ (필수)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기업·단체**(소비자와 공급자가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예약결제, 회원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정보기술 기반 플랫폼 활용)

⑤ 최근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보유한 기업·단체(필수사항은 아니나 가점사항)

※ 단, 재지정 신청 공유기업·단체는 최근 2년간(24~25년도) 공유기업 활동실적 필수

3. 선정 절차

○ 심사절차 : 서류심사→대면심사→현장평가(3단계)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장평가	최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검토 → 서류제출 완료대상 ■ 서면평가 → 대면심사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서류심사 통과대상 ■ 평가의견서 작성 → 현장심사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및 질의응답 → 대면심사 통과대상 ■ 최종의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심의 → 최종명단 확정 ■ 지정/재지정 기업(단체)
(‘26.04.06.~04.16.)	(‘26.04.17.~04.24.)	(‘26.04.27.~05.08)	(‘26. 5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반 심사 진행
- 2차 대면심사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3차 현장평가 :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바탕 질의응답

4. 제출서류

① 2026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

- 신규신청 : 2026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양식 [서식1], 사업신청 요약양식 [서식3]
- 재지정신청 : 2026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신청양식 [서식2]

② 지정요건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법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공유사업 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등 영상자료, 홍보물, 언론보도자료 등
- 신규신청 : 최근 2개월 이상 운영 실적 증빙자료
- 재지정신청 : 최근 2년(2024~2025년) 이상 실적 증빙자료

④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공통) 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단체)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기업) 정관 또는 규약(개인사업자 제외)
- (기업)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 발급 가능한 최근 2년간의 증빙자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법인	2024~2025년 재무제표 등
개인	2024~2025년 재무제표 등

- 창업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미 보유 시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갈음

5. 유의사항

-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신청요건은 공고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필요시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6. 지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1.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지정 취소

- 공유기업·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에 의거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지정기업·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업·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지정이 취소된 기업·단체는 공유경제 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지정 취소 요건 ◆

- 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대면심사 시 답변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 ③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④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 ⑤ 지정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 ⑥ 지정 후 연속 6개월 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 ⑦ 지정을 유지하여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지원대상 제외 및 사업비 지원금 환수

- 상기 지정 취소 요건의 ①~④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원된 사업비 전액은 환수 조치됨
- 상기 지정 취소 요건의 ⑤~⑦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전 통보 및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지원금 수령 및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기업·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7. 문의사항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1-600-1394